

의안번호	2210194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5.6.9.
추계번호	25D2617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	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범위에 다음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 - 「고용보험법」 제116조제2항제1호 -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제1항 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-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- 「직업안정법」 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범위 확대(안 제6조의2)

○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¹⁾ 외에 「고용보험법」 제116조

1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
2. 「최저임금법」
3. 「남녀고용평등법」
4. 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6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8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항제1호,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,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, 「직업안정법」 및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서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

- 개정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추가 수사·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참고로 2025년 기준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, 수사활동비가 지급되는 근로감독관은 총 3,163명임

[표 1] 2025년도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년도 예산(조정액 기준)	비고
근로감독역량강화(합계)	1,063	
근로감독관 역량강화	540	신규자 및 재직자 교육경비 포함
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	435	
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	88	
근로감독활동지원(합계)	12,248	
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	9,216	1인당 월 25만원 지급
근로개선 업무지원	3,032	노동개혁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, 수사 업무경비 포함

자료: 고용노동부

9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10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1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2.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1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15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6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17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8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(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)
19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(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